

인권조약 하에서 이해되는 차별금지원칙의 성질

박 정 원 (한양대학교 강사, 영국 런던정경대학 국제법 박사)

목 차

- I. 서론
- II. 실정국제법상의 차별금지조항의 법적 상실
 - 1.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 제26조
- III. 맺음말

I. 서론

차별금지원칙(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또는 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

ty: 이하 “차별금지원칙”이라고 칭함)은 국제적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법철학적 개념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차별금지원칙의 성질을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규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차별금지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사회적 견해 및 민족적, 사회적 기원, 재산정도, 출생, 사회적 지위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없이 동 선언에서 규정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¹⁾

1) 세계인권선언 제2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Doc. A/810 (1948).

UN헌장 제1조 제3항은 유엔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및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없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²⁾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장 제55조 (c)는 유엔은 차별금지과 평등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원칙은 다수의 인권관련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있다.⁴⁾ 이러한 국제문건들의 존재는 차별금지원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민족 등 광범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차별금지원칙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차별금지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차별금지원칙의 성질을 실정국제법적 틀에서 간략히 기술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국제인권규약(B 규약)만을 대상으로 접근하지만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국제인권규약(B 규약)의 가입국이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의 타당성은 확보된다고 할 것이다.

II. 실정국제법상의 차별금지조항의 법적 성질

1.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인권보호 일반원칙으로서의 차별금지와 인종적 근거에 기인한 차별금지라는 구체적 영역을 접목시킨 국제조약이 인종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이다.⁵⁾ 현행 국제법상 인종차별금지가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저명한 한 국제법학자에 의하면 “현행 국제법의 강행규범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인종상의 이유로 인한 차별금지이다”⁶⁾라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제법상 인종상의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인종철폐협약 제1조 제1항은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민족적 기원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공공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무력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구분, 배제, 제한, 선호”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인종차별적 행위

2) 유엔헌장 제1조 제3항.

3) 유엔헌장 제55조 (c).

4)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1249 UNTS 13;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577 UNTS.

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6, 660 UNTS 195.

6) Egon Schwelb, “Some Aspects of International Jus Cogens as Formula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1, 1967, p. 956.

7) 동협약 제1조 제1항.

에는 부작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열거한 차별 가능 영역은 단지 그러한 영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여타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종차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종’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이다.⁸⁾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인종’의 의미가 사회학적 의미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생물학적 차원의 인종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의 인종집단을 보호해야 함을 규범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은 ‘직접적 및 간접적’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적 ‘의도’(intent)의 존재여부는 인종차별적 행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어떤 정책이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이라 하여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특정 인종집단이 권리를 향유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인종차별협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접적인 형태의 차별로서 본질적으로는 차별적 결과(discriminatory out-

come)를 낳기 때문이다.⁹⁾

동 협약의 가입국은 제2조 제2항에서 “상황이 특별한 정책을 필요로 할 때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체 없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차별을 철폐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동 협약상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동 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인종차별철폐 의무는 해당 협약 가입국이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인종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법적 집행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내법이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치 않다면 기타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국내법상으로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명시했음을 밝히며 동 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강변하는 네덜란드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¹¹⁾

8) P. Justesen, “Equality for Ethnic Minorities-International and Danish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Vol., 10, 2003, pp. 1-43.

9) 이 점은 동 협약 하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를 통해 증명된다. *B.M.S. v. Australia*, Case No. 8/1996, CERD/C/54/D/8/1996, para. 9-2.

10) 동 협약 제2조 제2항.

11) *L.K. v. The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4/1991, UN Doc. A/48/18 at 131 (1993), para. 6-4.

이와 같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는 동 협약 가입국의 국내법이 설사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동 협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동 협약 가입국은 ‘실질적’으로 인종차별이 제거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입장은 동 협약에서 말하는 차별금지원칙이 형식적 평등원칙이 아닌 ‘실질적 평등원칙’임을 말해준다. 실질적 평등원칙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원칙은 단지 주어진 ‘같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평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실질적 평등원칙은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과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s)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평등원칙과 다르다. 기회의 평등이란 ‘주어진 상황 혹은 구조’로 인해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와 함께 되는 것 자체가 힘든 그 구조의 불공평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고 그것은 가령 운동경기에서 경주를 할 때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평등

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국가가 그러한 출발선을 갖게 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평등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과의 평등도 실질평등의 원칙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과 같다. 결과의 평등은 결과적 평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의 취약집단이 각각의 단계에서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동 협약 가입국의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인종집단이나 여기에 속한 개인이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들 인종집단과 개인을 순전히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그러한 특별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¹³⁾

동 협약 제5조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고, 제2조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에서 예시한 제1조 제4항은 인종집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종차별철폐

12) Sandra Fredman, “Combating Racism with Human Rights: The Right to Equality”, in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The Case of Rac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16-18; Catherine Barnard & Bob Hepple, “Substantive Equality”, *Cambridge Law Journal*, Vol., 59, 2000, pp. 562-585.

13) 동협약 제1조 제4항.

를 위해 동 협약의 가입국이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협약 가입국은 인종적 소수집단에 속한 소수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은 가입국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인종철폐를 위한 특별정책은 사실상의 평등(*de facto*)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그러한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그러한 특별정책은 인종적 불평등이 제거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동 협약에서 말하는 차별금지원칙은 사실상의 평등 혹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 가입국에게는 상당한 재량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동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황이 그러한 정책을 필요로 할 때”(When the circumstances so warrant)라는 표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표현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 협약 가입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의 기준에 있어 사실상 가입국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 판단에 있어 국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동 협약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 협약 하의 인종차별철폐위원

회는 일종의 간접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미국의 이른바 소수인종보호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동 협약상의 “상황이 그러한 정책을 필요로 할 때”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 협약 가입국(미국)이 동 협약상으로 소수 인종집단을 위한 특별한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인정한 것일 뿐 그러한 정책의 시행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위원회는 상황이 그러한 특별정책을 필요로 한때에, 가령 계속된 차별적 관행의 존재 등의 경우, 동 협약 가입국은 협약 제2조 제2항에 의거 그런 차별적 관행을 제거해 나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¹⁵⁾

소수인종 집단과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 어떤 형태의 계속적인 차별적 정책이나 관행을 동 협약 가입국은 특별정책을 통해 제거해 나가면서 소수인종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 위원회의 견해는 차별금지원칙을 실질평등의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해 볼 때 동 협약이 추구하는 평등원칙은 실질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동 협약의 목표는 “기회

14) 동협약 제2조 제2항.

15)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14/08/2001, UN Doc. A/56/18, para. 399.

의 평등”¹⁶⁾의 달성이라고 갈파한 Meron의 분석은 매우 예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 제26조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더불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 제26조도 실정국 제법상의 차별금지원칙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동 조항의 의미를 검토해 보면 무엇보다도 차별금지원칙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가령 B 협약 하의 차별금지조항인 제26조의 적용 범위는 B 협약 내에 규정된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B 협약 내에서 인정된 권리가 아니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 협약)내에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B 협약상의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네덜란드 정부의 주장에 대해 B 협약상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이를 반박하고 다른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도 B 협약 제26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 이사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제26조는 동 협약 가입국의 입법에 있어 차별적인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제26조가 직접적으로 동 협약 가입국이 예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율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동 협약의 가입국이 입법을 한 후에는 그 입법은 제26조의 원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할 것이다.”¹⁷⁾

동 이사회는 일반의견(General Comment) 제 18호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동 이사회의 의견은 B 협약상의 차별금지원칙의 본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인용할 가치가 있다.

“B 협약 제2조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B 협약상의 권리의 향유에 있어 차별금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B 협약 제26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것은 제26조 하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equal before the law) 나아가 법적 평등(equal protection of the law)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며... 제26조상의 평등의 권리란 포괄적인 ‘자동적 권리’

16) Theodor Meron, “The Meaning and Reach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9, 1985, p. 287.

17) S. W. M. Brooks v. *The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172/1984, UN Doc. Supp. No. 40 (A/42/40), at 139 (1987), para. 12.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though article 26 requires that legislation should prohibit discrimination, it does not of itself contain any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 matters that may be provided for by legislation... However, when such legislation is adopted in the exercise of a State’s sovereign power, then such legislation must comply with article 26 of the Covenant.”

(autonomous right)를 말한다. 그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사실상 혹은 법적으로서의 차별’(discrimination in law and in fact in any field)을 받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 제26조는 B 협약 가입국의 모든 입법사항과 그 시행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B 협약 가입국이 제정한 국내법은 동 협약 제26조의 차별금지원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26조의 차별금지원칙은 B 협약상에 규정된 권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다.”¹⁸⁾(부분 강조)

인권이사회의 일반견해는 더 나아가 제26조상의 차별금지원칙은 B 협약 가입국이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차별금지가 아닌 실질적 평등원칙(the principle of substantive equality)하에서 이를 위한 가입국의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이란 때때로 동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영속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요구한다. 이를테면 동 협약 가입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로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향유하는데 불과할 경우가

입국은 그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교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처우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 협약 하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¹⁹⁾(부분 강조).

같은 맥락에서 동 협약 가입국이 공공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 ‘의도’(intent)가 실질적인 평등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Diergaardt 사건에서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실질적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동 사건에서 청원자들은 Rehoboth Baster 라는 인종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1872년 이래로 남미비아에 정착해서 자율적인 공동체로 생활해 왔으며 그들의 언어는 Afrikanns였다. 남미비아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Afrikanns 언어로 제출하는 그 어떤 민원도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 공무원들은 물론 Afrikanns라는 언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었다. 인권이사회는 동 협약 가입국의 재량으로 국가의 공식언어와 비공식언어를 구별 짓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동 협약 제26조에서 말하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

18) HRC General Comment No. 18, UN Doc., HRI/GEN/1/Rev.1 at 26 (1994), para. 12.

19) *Ibid.*, para. 10.

는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후, 그러나 동 청원에서 검토된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남미비아 정부의 조치는 제26조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부의 조치는 명백히 특정 인종집단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⁰⁾

실질적인 평등조항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B 협약 제26조의 성질, 즉 자동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은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적용 범위는 협약 가입국의 다양한 입법 사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민감한 차별적 사항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국적에 관한 법령이 인종,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해 소수자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를 국적과 관계해서 특히 보호해야 할 경우가 이른바 국가승계의 경우인데 영토 주권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국가는 국가정체성 확보 차원에 주력하여 특정 다수 인종의 정체성 보호를 국가정체성의 유지와 동일시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영토내의 소수인종과 다수인종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형성된 국가의 다수 세력이 정체성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국적 부여 요건에 인종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국적법의 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인 국적법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B 협약 제26조의 성질에 의해, 즉 자동적 권리로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하에서 ‘이미’ 금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B 협약 제26조에 나타나 있는 차별금지원칙의 법적 성질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은 본고의 논의에서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지만 동 협약의 제12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상의 차별금지조항인 제14조의 법적 성질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된다. 제12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의 유럽인권협약상의 차별금지조항인 제14조는 B 협약 제26조와는 달리 자동적인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협약 내의 특정의 권리 조항과 연계해서만 원용될 수 있었지만 동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상의 차별금지조항인 제14조도 B 협약 제26조와 같이 자동적인 권리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인종차별철폐 협약 및 국제인권규약(B 협약) 제26조상으로 파악되는 차별금지원칙의 성질에 관한 논의는 유

20) *Diernaard, et al. v. Namibia*, Communication No. 760/1997, UN Doc. CCPR/C/69/D/760/1997 (2000), para.10.10.

21) 이 문제에 관한 논의로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 Jungwon Park, “Integration of Peoples and Minorities: An Approach to the Conceptual Problem of Peoples and Minorities with reference to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s Rights*, Vol.,13, 2006, pp. 69-93.

22) 유럽인권협약 의정서 No. 12는 2005년 1월 발효하였다. Protocol No. 12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TS. No. 177.

립인권협약 하에서의 차별금지원칙에도 대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III. 맺음말

위에서 간략히 검토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국제인권규약(B 규약) 제26조에서 파악되는 차별금지조항의 법적 성질은 ‘실질적 평등원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경우는 실질평등원칙이 구체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B 협약상으로는 해석론적으로 실질평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평등원칙이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원칙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들의 가입국들은 가입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해야 할 적극적인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정국제법상의 차별금지조항이 갖는 엄청난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실정국제법상 파악되는 차별금지원칙의 성질에 관한 논의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국제인권규약(B 규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적 작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결국 핵심 사항은 한국 사회의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의 기저에는 차별금지원칙의 본질이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실증적, 법철학적 이해가 바탕을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